

# 220V승압에 따른 기술기준 운영요령

개정 92.9.20 공업진흥청고시 제92-563호

공업진흥청에서는 발전소 건설제한 등으로 전력공급이 한계에 부딪침에 따라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전기용품 에너지절약 대책의 후속조치로 110V/220V 겸용제품(197개품목)의 생산 및 수입금지 시기를 개정고시 하였기에 관련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제 1 조(목 적)** 이 요령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의거 2차배 전전압의 220V승압방침에 따른 기술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90. 7.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6.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110V전용기 기 및 110V/220V겸용기기에 대한 제조 및 수입의 금지시기를 정하는데 있다.

부 칙 (92. 9. 2)

**제 3 조(형식승인 금지시기)** 110V전용기기는 별표 1, 110V/220V겸용기기는 별표 2와 같이 각각 제조 및 수입의 금지시기를 정한다. 다만, 동 대상품목중 동력용으로 3상전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존 220V에서 220V/380V 겸용 및 380V 전용으로 승압하는 것을 말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겸용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이 규정에 의한 겸용제품 생산금지시기 이전에 220V 단용제품으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93. 1. 1부터 시행하는 품목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은 '93. 1. 1부터 단용제품을 생산하되 단용제품으로의 형식승인은 '93. 6. 30까지 얻어야 한다.

**제 4 조(적용배제)** 제 3조에 규정한 대상 품목 이외의 품목과 별지에 열거한 품목 일지라도 인체에 연속 직접 접하여 사용되는 품목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8조에 정하고 있는 전기용품 심사위원회에서 소형제품으로 심사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본요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110/220V 겸용기기의 제조 및 수입의 금지시기

시 기	대 상 품 목
1993. 1. 1	(1) 전기냉방기(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이하, 전열장치의 소비전력이 5kw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전기냉장고(전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 l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전기냉장고(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4) 냉장용쇼케이스(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5) 냉동용쇼케이스(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6) 전기냉수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7) 전기제빙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8) 전기제습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9) 자동판매기(전열장치, 냉각장치 또는 액체수납장치를 가진 것에 한하고 승차권용의 것은 제외한다) (10) 환풍기 및 써큐레이타(정격소비전력이 300W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전기그릇세척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전동기를 갖는 것에 한한다)

시 기	대 상 품 목
1993. 7. 1	(1) 선풍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비디오테이프레코더 (3) 전기냉풍기(정격소비전력이 300W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전기보온밥통 (5) 고주파웰더(정격고주파출력이 2.5kw이하인 것에 한한다) (6) 가정용저주파치료기 (7) 가정용초음파치료기 및 가정용초단파치료기(정격고주파출력이 50W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전기세미기, 야채세정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9) 전기빙삭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디스포자(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면도용거품발생기 (12) 전동식흡입기 (13) 전기맛사지기, 지압대용기 및 기타 가정용 전동력응용치료기 (14) 등사기(긴폭이 420mm이하, 짧은폭이 297mm이하인 것의 인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0W이하인 것에 한한다) (15) 물수건포장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시 기	대 상 품 목
1994. 1. 1	(1) 테이프레코더 (2) 레코드플레이어 (3) 전기축음기 (4) 앰 프 (5) 튜 너 (6) 프리앰프 (7) 테이프덱 (8) 테이프플레이어 (9) 기타음향기구 (10) 초음파가습기 (11) 전류제한기 (12) 전기세탁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13) 전기온풍기(정격소비전력이 5kw이하인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14) 공기청정기(정격소비전력이 500kw이하인 것에 한한다) (15) 전기마루닦이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16) 전기구두닦이기 (17) 전기탈수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원심분리식인 것으로서 섬유제품의 탈수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8) 전기칼날갈개(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19) 전기흑판지우개크리너(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전동미싱(속도조절장치가 내장된 것에 한한다)

시 기	대 상 품 목
	(21) 사무용인쇄기(긴폭이 515mm이하이고 짧은폭이 364mm이하인 것을 인쇄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0W이하인 것에 한한다) (22) 전기열풍응용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23) 8mm영사기(텔레비전용인 것 및 광원으로서는 크세논아아크식 램프하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24) 전자후레쉬(광원의 정격축적전력량이 1.5kw이하인 가전형인 것에 한하며, 현미경용인 것, 의료기계기구용인 것 및 기타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5) 조광기(정격용량이 1KVA이하인 것에 한한다) (26) 잡음방지기(텔레비전수상기 및 라디오수신기의 잡음이 원인이 되는 고주파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컨덴서 또는 컨덴서 및 코일을 주된 구성요소로 하는 것에 한하며, 정격전류가 5A를 초과하는 것 및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7) 전기우물펌프 (28) 모니터, 프린터, 전동타자기 (29) 전기오븐 (30) 전기건조기 (31) 전기스토브, 기타채난용전열기구 (32) 전기변좌

시 기	대 상 품 목
1994. 7. 1	(1) 전기펌프(정격소비전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 분상기동유도전동기 (3) 콘덴서기동유도전동기 (4) 농형3상 유도전동기 (5) 반발기동 유도전동기 (6) 세딩코일 유도전동기 (7) 전기육묘기 (8) 송풍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9) 아이스크림후리자(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커피분쇄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전기깡통따개 (12) 전기고기갈개, 전기육절기, 전기빵짜르기, 전기칼(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13) 콘덴서유도전동기 (14) 기타 단상전동기 (15) 전기우유포트 (16) 전기주운기 (17) 전자유도가열식조리기
1995. 1. 1	(1) 전기인두가열기 (2) 모발가습기 (3) 전기보온그릇

시 기	대 상 품 목
	(4) 전기보온접시 (5) 전기가운기 (6) 전자레인지 (7) 전기소제기(정격소비전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전기연탄가스배출기(정격소비전력이 300W이하인 것에 한한다) (9) 전기분무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전기전조기(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전기기포발생기(정격소비전력이 100W이하인 것에 한한다) (12) 전기잔디깎기 (13) 전기가위 (14) 전기연필깎기 (15) 전동식완구 (16) 전기가습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7) 방범정보기 (18) 가정용전위치료기, 가정용전격치료기 (19) 전격살충기 (20) 전기냉장고(흡수식인 것에 한한다) (21) 전기소독기(전열장치가 있는 것에 한하며 의료용인 것을 제외한다) (22) 전기접착기(고주파용접기를 제외한다) (23) 전기부란기 (24) 전기프레스기(섬유제품의 프레스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사 기	대 상 품 목
	(25) 전기콘로, 기타조리용전열기구 (26) 전기머리인두, 파마넨트기, 전기수염깎기 용탕비기, 기타이용용 전열기구 (27) 전기온수기 (28) 기타가정용전열치료기, 전기뜸질기(방석 형태 제외) (29) 타올찜통 (30) 전기스팀바스 및 동 전열기 (31) 전기사우나바스 및 동 전열기 (32) 전기재봉인두 (33) 전기순간탕비기 (34) 수도동결방지(수도관 및 수도꼭지의 안쪽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35) 전기온수보온기 (36) 전기증기발생기 (37) 전기분수기 (38) 전기살수기
1995. 7. 1	(1) 전기그라인더(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전기썰다(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전기드릴(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전기대패(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전기톱(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6) 전기드라이버(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기	대 상 품 목
	(7) 기타전동공구(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전기면도기 (9) 관상어용전기포발생기(정격소비전력이 100W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육조용전기포발생기 (11) 자동세정건조식변기 (12) 반사투영기(정격소비전력이 2kw이하인 것에 한하며, 텔레비전용인 것 및 광원으로 사용 크세논아아크식 램프하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전기소독기(살균등을 갖는 것에 한하며, 의료용은 제외한다) (14) 휴대전등(충전식인 것에 한한다) (15) 전기다리미 (16) 전기주전자 (17) 전기소세지구이 (18) 전기후라이팬 (19) 전기냄비 (20) 전기핫프레이트 (21) 전기토스타 (22) 주우서(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23) 주우서믹서(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24) 후드믹서(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996. 1. 1	(1) 전열보오드 (2) 관상어용히타 (3) 전기훈증살충기

시 기	대 상 품 목
	(4) 전기향로
	(5) 전기약탕기
	(6) 가정용온열치료기
	(7) 전기생선구이
	(8) 전기계란삶기
	(9) 전기찜통
	(10) 전기물끓이기
	(11) 전기화로
	(12) 전기온장고
	(13) 전기레인지
	(14) 전기채난의자
	(15) 전기뜸질기(방석형태)
	(16) 수도동결방지(수도관 및 수도꼭지의 안쪽에 부착하는 것)
	(17) 가정용전기채유기(정격소비전력 500W이하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8) 전기약기
	(19) 전자약기
	(20) 텔레비전수상기(산업용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한다)
	(21) 라디오수신기
	(22) 부자(방폭형인 것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3) 차임벨(방폭형인 것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4) 전기문걸이(방폭형인 것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5) 전동식천공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 기	대 상 품 목
	(26) 전기문서세단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27) 전기냄새제거기
	(28)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이하인 것에 한한다)
	(29) 슬라이드영사기(텔레비전인 것 및 광원으로서 크세논아아크식 램프하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30) 오버헤드영사기(텔레비전인 것 및 광원으로서 크세논아아크식 램프하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31) 정류자전동기
	(32) 전기포리셔(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33) 라미네이터
	(34) 옥수수튀김기
	(35) 벨(방폭형인 것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36) 텔레비전수상기용 부스타
	(37) 초음파 쥐쫓음기
	(38) 초음파세정기
	(39) 관상식물용 히타
	(40) 어학실습용 구조종기
	(41) 전자오락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브라운관을 갖는 것에 한한다)
	(42) 전기모포
	(43) 전기이불
	(44) 전기방석
	(45) 전기무릎덮개

시 기	대 상 품 목
	(46) 전기요 (47) 전기카펫 (48) 전기조끼 (49) 전기장판 (50) 전열시트 (51) 전기매트 (52) 전기납땜인두 (53) 모발건조기
1997. 1. 1	(1) 전기이발기 (2) 인타폰 (3) 전기빗 (4) 모발말개 (5) 직류전원장치(교류전원장치와 겸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이하인 것에 한하며, 무선통신기의 시험용인 것 및 기타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6) 전기칫솔 (7) 전기술

품질경영  
 확산으로  
 국가경제  
 되살리자